

결 정

2018 - 403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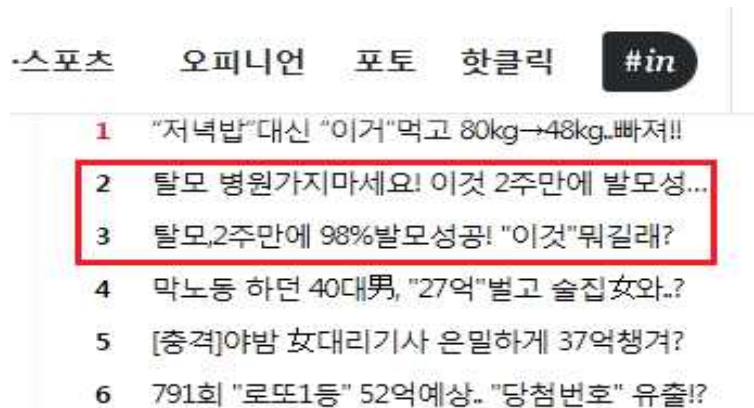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 「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뭐길래?」 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월 29일자 「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①이데일리



<18. 1. 29. 00:06 캡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02246619082312&mediaCodeNo=257&OutLnkChk=Y>

②코리아헤럴드



<18. 1. 29. 00:38 캡처>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80128000056&kr=1&nt=1&md=20180129003027_BL&kr=1>

이데일리 코리아헤럴드는 탈모샴푸 ‘탈젠’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뭐길래?」라고 달아 마치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2주만에 98%발모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이 문구를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탈젠’의 임상데이터가 나오는데 두피면역력이 호전되고 탈모증상이 감소한다는 것이지 ‘2주 사용에 98% 발모한다’는 문구는 없다.

이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ad.ladp.co.kr/campaign/?no=1G4x8I2e39J4&acode=qD7vHkdrFO&score=m5OTLcW0yV>>



SNS 화제! 탈모삼푸의 끝판왕! 탈젠!

사용고객 만족도 1위 ★★
상품판매 100만개 돌파 ★★
구매후기 100만건 돌파 ★★

탈모로 고민인분이라면 이번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이벤트 신청기간 : ~ 2017.12.22 까지 [GO! >>>](#)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박재현	박재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